

광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나58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나5860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95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최지현

변론 종결 2024. 4. 26.

판결 선고 2024. 5.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9512 판결

주문

-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20,6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20,653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5,406,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나. 피고는 위 15,406,692원의 채권에 관하여 C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C으로부터 2017.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67호로 '원고가 2016. 8. 10. 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한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2018. 6. 8. 위 대여금 잔액 7,500만 원을 2019.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잔액 67,100,000원2) 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타채566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권자로서 2023. 1. 27. 같은 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51,693,308원을, 2023. 10. 30. 같은 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15,186,039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C의 E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발생(이 사건 합의)

C은 2019. 1. 28. E와 재단법인 H의 운영권 및 그 소유 부동산, I 중·고등학교 등의 양도와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생략)

합의함에 있어 편의상 C(원고)을 갑이라 칭하고, E(피고)를 을이라 칭하면서 아래사항에 합의하다.

- 아래-

1. 현재 재직 중인 교사와 행정직은 그대로 인수인계 받기로 한다.

(단 행정직 5명 중 1명은 갑이 책임지고 퇴직시키기로 한다)

2. 을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합의금 25억을 지불하기로 한다.

(합의금 25억 중 기지급 합의금 7억 원을 포함 추가로 5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합계금 12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갑의 채무금 J조합 대출금 3억 원을 을이 책임지면서 총 합의금으로 15억 원을 지불된 것으로 합의하고, 갑과 을이 2019년 2월 11.일 J조합를 방문하여 갑의 J조합 채무금(3억 원)을 을이 승계한다.

(생략)

3. 합의잔금 10억 원 중

■ 1차로 2019년 6월 30.일까지 3억 원을 을이 보관하되, 아래사항의 모든 재판이 끝나 판결이 완결되면 갑의 요구로 을은 조건 없이 지불한다.

① K 1억 7천만 원 재판 중, ② L 퇴직금 8천만 원 재판중

③ H 교직원 퇴직금 5천만 원 별도(M의 보험료는 을이 승계)

■ 2차로 2019년 8월 31.일 4억 원을 지불한다.

■ 3차로 2019년 10월 31.일 3억 원을 지불한다.

4. 전남 보성군 N의 교사와 실내체육관 기초공사비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2억 1천만 원과 학교에 급여로 빌려준 1억 2천 2백만 원 합계 3억 3천 2백만 원을 2019년 4월 중으로 지불한다.

5. 합의 전 재단법인 H의 부채가 있다면 갑이 책임을 진다.

7. 상기사항에 합의하면 갑은 법인과 학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8. 잔금이 정리되고 합의가 완성되면 합의 목적물과 재단법인 H 관련 모든 권한은 을에게 전부 인계된다(갑의 지분 부동산 50%를 을에게 2019년 8월 31.일까지 중도금 일부 4억 원을 지불하면 등기 이전한다). 단, 합의기간 전이라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면 갑의 모든 권한은 종료한다.

10. 전남 보성군 N 교사 실내체육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사항 일체를 갑은 을에게 승계한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등

1) C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 제4항에 따른 약정금 채권3)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6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E는 그 집행해제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7267호로 3억 3,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C은 위 공탁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979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0. 8. 18. 같은 법원 ○ 배당절차 사건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인 3억 3,200만 원을 C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그런데 C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배당표 작성이 있기 전인 2019. 8. 23. 피고에게 위 1)의 해방공탁금에 관한 권리(별지 목록 기재 채권)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 8, 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9. 8. 23.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6,71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C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같은 지원 G 각 배당절차 사건에서 합계 66,879,347원(= 51,693,308원 + 15,186,03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액은 220,653원(= 67,100,000원 - 66,879,347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해 894,400원(= 자격증 및 학위 취득을 위한 학비 1,294,400원 - 지급액 4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채권액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서 공제 내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2) 채무자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3, 15,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보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채무내역]

1	전남 보성군 P 학교용지 7,084m ² 중 2분의 1 지분	61,985,000원	5억 5,880만원	-토지가액산정방식 : 개별공시지가×면적×1/2-가압류 : 2억원(채권자 : 재단법인 H)-근저당권설정액 : 3억 5,880만원(채권자 : J조합)
2	위 Q 학교용지 416m ² 중 2분의 1 지분	3,640,000원		
3	위 R 학교용지 78m ² 중 2분의 1 지분	713,700원		
4	위 S 학교용지 582m ² 중 2분의 1 지분	5,092,500원		
5	위 T 학교용지 283m ² 중 2분의 1 지분	2,476,250원		
6	위 U 임야 595m ² 중 2분의 1 지분	416,500원		
7	위 V 임야 96,793m ² 중 2분의 1 지분	19,600,583원		
8	전남 보성군 W에 있는 X호 집합건물	155,000,000원	429,265,630원	-가압류 : 315,265,630원(채권자 : Y)-근저당권설정액 : 114,000,000원(채권자 : Z조합)
합계	248,924,533원	988,065,630원		

[부동산 관련 이외의 채권·채무내역]

1	대여금(금전소비대차)	원고	67,100,000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67호
2	공사대금	K		217,664,785원5)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 2020가합13305 공사대금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190,865,217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임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3305
3	해방공탁금	C	332,000,000원		별지 목록 기재 채권
4	모텔 매매대금	C		45,000,000	광주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 5314
합계	377,000,000원	284,764,785원			

[C의 자동차 보유 내역]

1	2013년식 승용에쿠스(차량번호 1 생략)	19,294,000원	
2	영업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	20,000,0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자동차기재(명칭, 연식 등)가 없어 명확한 차량가액의 산정이 어려우나, 위 1. 차량가액과 지방세액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차량 또한 약 2,0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납부세액이 위 1. 차량과 비슷)
합계	39,294,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E가 C의 소극재산인 J조합 대출금 3억 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E에 대하여 합의금 25억 원 중 J조합 대출금 승계를 제외한 미지급 잔금 10억 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① E는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인 2017. 10. 15. C과 사이에 재단법인 H 및 학교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며,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7억 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법인 H의 2018. 4. 11.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E가 2017. 10. 15. 약속한 합의서 이행 및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사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자 이사 E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점, ③ 위와 같은 E의 채무 불이행 및 공동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고자 C은 2019. 1. 28. E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E는 계속해서 이 사건 합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C이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E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오히려 E는 2019. 11. 19.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른 약정금 248,407,3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⑤ E는 C과 재단법인 H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21나59891(본소) 건물인도, 2021나59907(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해 재단법인 H와 연대하여 556,48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조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C이 재단법인 H에 대해 전남 보성군 AA 신축건물 건축비 310,452,000원과 AB 기존건물 리모델링비 300,773,950원을 합한 총 611,225,9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재단법인 H에 대하여 611,225,9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되나, ① 위 건물이 재단법인 H의 정관 변경을 통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점, ② 전남 보성군 N 실내체육관 교사 등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등 재단법인 H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합의 전 재단법인 H의 부채가 있다면 C이 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점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C과 재단법인 H 및 E 사이에서 'E와 재단법인 H는 연대하여 C에게 556,48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그 조정에 따른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재단법인 H(E가 대표자이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음에도 재단법인 H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단법인 H를 상대로 매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후 C와 재단법인 H 사이의 광주지방법원2021나59891(본소) 건물인도, 2021나59907(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2022.

4. 20. 아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정조항

1. 조정참가인 E와 원고(재단법인 H, 이하 같음)는 연대하여 피고(C, 이하 같음)에게 556,48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분할하여 2022. 5. 31.까지 300,000,000원, 2022. 6. 30.까지 256,48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위 E와 원고가 위 각 분할금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조정참가인 E는 피고 명의의 J조합 채무를 인수한다.
3. 원고, 조정참가인 E, 피고는 진행 중인 모든 소송(위 E와 피고 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을 상호 취하하고, 위 E가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도 취하한다. 다만 원고, 조정참가인 E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판결(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 포함)은 별도로 한다.
4. 피고가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 조정참가인 E, 피고는 상호간에 2019. 1. 28.자 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 학교와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조정에 이른 경위는, C이 재단법인 H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음에도, 재단법인 H가 부동산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 제1심에서 '매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재단법인 H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제2심에 이르러 E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재단법인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조정조항은 C과 E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C와 재단법인 H, E 사이에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위 556,480,000원 채권의 성질을 이 사건 합의 채권이 변형된 것으로 보더라도, E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H도 연대하여 위 채권의 채무자가 된 점, 재단법인 H 및 I 중·고등학교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재단법인 H, E에 대한 위 556,480,000원 조정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는 E가 C에게 지급할 채권 중 일부를 집행공탁하였는데 K가 2023.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그 집행공탁금 중 205,067,722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따라 그 금액에 대하여 C이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C은 이에 관하여 E와 재단법인 H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단531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3305호 사건 판결에 따라 K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C과 재단법인 H인 점, K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22타채56364 및 2022타채56362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점을 알 수 있고, C은 E가 위 C의 K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C이 E에 대하여 K의 위 배당금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그 외 피고는 C이 2023. 3. 10. 재단법인 H 및 E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기재에 따라 C이 E에 대한 492,876,178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 및 앞서 살핀 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E에 대한 492,876,178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무자력 여부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 당시 적극재산으로 665,218,533원(= 부동산 248,924,533원 + 부동산 외 채권 377,000,000원 + 자동차 가액 39,294,000원), 소극재산으로 1,272,830,415원(= 부동산 관련 채무 988,065,630원 + 부동산 외 채무 284,764,785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등

1)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C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잔액이 220,653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20,6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20,653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6).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김정숙

판사이상현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전체에 대하여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2023. 8. 2.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15,406,692원의 범위 내에서만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당시까지 대여금 잔액은 계산상 6,700만 원이나 원고가 관련 집행신청비용으로 지출된 금액 10만 원을 C이 변제한 금액에서 먼저 공제함에 따라 6,710만 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 금액 6,710만 원을 대여금 잔액으로 본다.

3) C은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5809호로 3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E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21.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가압류권자인 C에게 3억 3,200만 원, 나머지 잉여금 905,747원은 채무자 E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C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3305 공사대금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190,865,217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8. 23.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임

6)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220,6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라고 구할 수도 있다.